

도시가스 매립(매몰)배관, ‘특정가스사용시설’에서 제외 및 코드기준 일부 폐지 건의



지난 3월 13일 서울무역전시장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'건축물내 매립배관 제도개선 현황과 과제' 세미나

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'특정가스사용시설' 규정과 관련 코드기준(KGS FU551 등) 등 세부기준이 건설업계와 설비시공업계에 규제 강화로 적용됨에 따라 민원이 속출하고 있어, 이를 제외 및 폐지하여 줄 것을 지난 3월 14일 산업자원통상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건의했다. 현재까지 단 한건의 가스누출사고도 없었던 매립(매몰) 배관에 대해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고가의 다기능가스 안전계량기를 설치토록 하고, 추가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및 기술검토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이중규제로 지적되고 있다. 또한 점검구의 경우 천정높이와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개수도 달라지며, 설치 후 실질적인 수리·보수를 할 수 없는데다 미관상 많은 민원을 초래할 수 있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. 이에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△건축물 내 도시가스 매립(매몰)배관 특정가스사용시설 제외 △가스용 금속 플렉시블배관용호스 은폐(천정) 설치 시 점검구 또는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 의무화 Code기준의 개선을 촉구했다. 또한 지난 3월 13일 제도 홍보를 위해 개최된 '건축물내 매립배관 제도개선 현황과 과제' 세미나에서도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책 마련을 건의했다 [편집자주]

1. 건축물 내 도시가스 매립(매몰)배관 특정가스사용시설 제외 건의

가. 현황

-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【특정가스사용시설】①항2호의 가.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·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(2013.7.25 개정 시행 중)

개정전	세대 내 도시가스 매립배관 안전공사 검사 없었음
개정후	세대 내 도시가스 매립배관을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지정, 완성검사 및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 의무화

정책으로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상반되는 규정으로 종전과 같이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건의

- 세대 내 바닥·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하는 경우 1세대 당 공사 노임이 평균 30,000~35,000원인데 반해 완성검사수수료가 28,000원으로 공사노임의 80%이상 차지, 주택이 전도되는 과도한 규제와 검사비 상승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민원 초래

〈아파트 1,000세대 공사 시〉

개정전	최대 2,330,000원(시공감리 수수료)
개정후	30,330,000원(완성검사+시공감리 수수료) ※ 1,000세대 이상일 때 완성검사 비용은 수천만 원 이상임

나. 문제점 및 검토의견

- 가스용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필한 제품을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매립(매몰)시공 시 도시가스사업자 입회 하에 시공업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시공관리자가 시공관리를 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시 가스를 공급·사용하고 있음
- 현재까지 단 한건의 가스누출사고도 없었던 매립(매몰) 배관에 대하여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아래 고가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토록 하고,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도록 함
- 이는 가스사용을 억제하는 규제 일변도의

※ 참고사항

- 특정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수수료는 최대 914,000원(토지 경계 내 여러 동의 대규모공장 또는 고층빌딩 등은 1건의 완성검사 수수료로 책정)
- 사용자공급관 시공감리 수수료는 최대 2,330,000원(토지 경계 내 공동주택 세대수가 몇 천 세대라도 1건의 시공감리 수수료로 책정)

2. 가스용 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 은폐(천정) 설치 시 점검구 또는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 의무화 Code기준 폐지 건의

가. 현황

- KGS FU551 2.5.4.5 배관 실내설치 2.5.4.5.2 저압의 내관을 환기가 잘 되지

않는 곳에 은폐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13.12.18>

(6)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점검구를 설치한다. 다만, 점검구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와 실질적인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2.8.6.3에 따른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한다.

(6-1) 점검구의 규격은 가로 50×세로 50cm 이상으로 한다.

(6-2) 점검구는 점검자가 배관의 가스누출 등의 점검과 수리보수가 가능한 간격 이내로 설치한다.

Code개정전	별도 규정 없었음
Code 개정후	점검구를 설치하고, 그렇지 않을 경우 고가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해야 함

나. 문제점 및 검토의견

- 1997년부터 현재까지 세대 내 은폐(천정) 시공 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인 가스용 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를 사용하여 도시가스사업자 입회하에 시공관리자가 자체검사를 시행하여 왔으나 17년 동안 가스용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와 관련하여 단 한건의 가스누출사고도 없었음
- 또한 점검구(가로 50cm×세로 50cm)를 설치한다 해도 천정높이의 현장여건상 실질적인 수리·보수를 할 수 없으며 무용지물인 점검구가 될 수밖에 없고 미관상 많은 민원을 초래
- 세대 내 가스용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 은폐(천정) 설치 시 탄소마대강을 사용하여 배관

을 보호함은 물론 연결부 없이 시공되어 가스누출사고가 있을 수 없음에도 Code기준에서 점검구 설치를 규정함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며, 점검구 설치에 따른 과도한 비용증가로 소비자의 가스사용 선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경제성을 고려 폐지하여 줄 것을 건의

- 점검구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의무설치를 Code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, 모법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내용을 하위규정인 Code기준에서 규정함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됨

- 국내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생산 업체가 한 곳에 불과해 사실상 독과점 특혜 의혹이 있으며, 또한 제품 가격이 일반 가스계량기의 10배 이상 과도하게 책정되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민원이 되고 있음
예) 1가구 취사용 도시가스만 사용 시 월평균 가스요금 : 5,000원 내외

1가구 가스요금

5,000원×12개월(1년) = 60,000원

5년(가스계량기 검교정 및 교체주기)×60,000(1년 요금) = 300,000원

-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개당 가격 185,000 + 설치비 15,000 = 200,000원 이상으로 가스요금 대비 66%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아 경제성 및 현실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

※ 참고사항

- 일반가스안전계량기 개당 가격 : 18,500원
-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개당 가격 : 185,000원
- 5년 마다 가스계량기를 검교정 또는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도시가스 사용을 외면하게 하고 전기(인덱션렌지) 사용을 유도하여 정부 에너지정책 및 당초 목표인 가스산업 활성화 방안과는 정반대인 결과를 가져옴